

## 『자녀사랑 외화로유학적금』 특약

### 제1조 (적용범위)

『자녀사랑 외화로유학적금』(이하 "이 적금"이라 합니다.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

### 제2조 (예금의 종류)

이 적금의 계정과목은 외화정기적금으로 합니다.

### 제3조 (가입자격)

이 적금의 가입자격은 개인으로 합니다.

### 제4조 (가입기간)

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합니다.

### 제5조 (예치통화)

이 적금의 예치통화는 미국달러화, 유로화, 일본엔화, 영국파운드화, 스위스프랑화, 캐나다달러화, 호주달러화 및 뉴질랜드달러화로 총 8개 통화입니다.

### 제6조 (납입한도 및 적립방법)

- ① 이 적금은 납입금액, 적립횟수 및 적립일자에 대한 제한 없이 만기일 전날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.
- ② 만기일 전 1개월간의 납입금의 합계는 그 이전에 납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### 제7조 (적용이율)

- ① 이 적금의 이율은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자유적립외화적금이율의 가입기간 해당 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② 예금주가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 또는 가입기간 중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명의로 유학경비 송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 0.20%p의 이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.

### 제8조 (분할인출)

- ① 예금주는 만기일 전 5회까지 이 적금을 분할인출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 적금은 선입선출방법을 통해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.
- ③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인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자유적립외화적금이율의 예치기간 해당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

### 제9조 (중도해지)

제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금주가 만기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것으로 봅니다. 이 때 중도해지하는 납입금의 이자는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

### 제10조 (만기후 이자)

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납입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가입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후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

### 제11조 (갱신)

- ① 이 적금은 예금주가 만기일 이전에 가입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만기일(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)에 전과 동일한 기간 또는 예금주가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자동갱신 처리합니다.
- ② 갱신된 적금의 이자는 갱신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제7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적용이율을 정합니다.

### 제12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.

2017. 8. 18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-약관-0115호